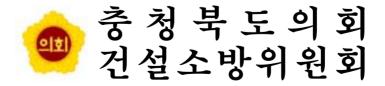
행복한 도민신뢰받는 의회

제352회 정례회 ' 16. 12. 14.(수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27 2016. 12. 1.(목) 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병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박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,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- 나. 주요내용
 - O 골재채취사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완화함(안 제5조제3항)
 - 점용료 가산금징수, 요금 부과·징수 근거법령 정비(안 제5조, 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: 김경형)

-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 - 골재채취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현실화하고, 가산금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
-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 - 「하천법 시행령」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행 1억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현실화 하였으며,
 - 가산금 등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절차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 - O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,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・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 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 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 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 할 납부한다.
 - 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 중 "「충청북도 도세 조례」를"을 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

한 법률」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혀 행
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략)

- 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제42조제2항을 따른다. <u>다만 골재</u>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, 채취료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- ③ 골재 채취료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5호에 의한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.

개 정 안
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행 과 같음)

2 -----

-----. <후단 삭제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⑤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 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제9조(준용) -----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 도세 조례 를 준용한다.

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 생하였을 경우, 이미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.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<삭 제>

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 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 차에 따른다.

----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--.

관계법령

[하천법]

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-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 - 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사업인 경우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[하천법 시행령]

제42조(점용료등의 징수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, 2016.6.28>
-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0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